

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임만균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관악구 제3선거구 임만균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지난 10월 17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지방자치단체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내역을 공개하며 대

상 비목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, 의정운영
공통경비, 의회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.

공개단위는 비목에 따라 ▶기관운영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
무추진비는 기관장, 부기관장, 실·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
(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한다)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 ▶
지방의회는 의회 전체의 명의로 집행하는 경우에 의정운영공
통경비는 지방의회와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내역을 공개 ▶의
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의장, 부의장, 상임위원장, 예결
위원장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
항목은 사용자, 일시, 장소, 집행목적, 대상 인원수, 금액, 결
제방법(신용카드, 제로페이, 현금 등), 비목으로 구분하고 공
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
이내에 공개합니다. 그리고 공개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
에 게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.

관계 규정 변동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, 업무추진비 내역 공
개 및 부당사용시의 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안에 ▶
관계 규정 변동사항을 반영함(안 제3조) ▶업무추진비 공개시
기 및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6조) ▶교육 및 점검에
관한 용어를 수정함(안 제8조제2항) ▶부당사용시의 제재를
명확히 규정(안 제9조제2항)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

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관계 규정 변동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,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및 부당사용시의 제재를 명확하게 규정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